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7. 5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7. 6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9회 사하구의회(제1차정례회)

제3차 총무위원회(2005.7.20)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황해룡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제·개정으로 위원회 결정사항의 변경사항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규칙」이 폐지되고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」이 제정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관련 조항을 삭제함. (안 제3조제3호, 안 제3조제6호)
- 「부산광역시사하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되고 「부산광역시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함. (안 제3조제23호)
- “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”을 결정사항에 추가하고자 함. (안 제3조 제26호)
- 불합리한 문안 일부 수정(위촉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 중복) (안 제9조)

3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

4. 전문위원 검토사항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최근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각종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,
- 불합리한 문안을 수정(안 제9조)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